

서울특별시 성북외국인노동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

의 안 번 호	2083
--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4년 8월 12일
제 출 자 : 서 울 특 별 시 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외국인노동자센터는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상담·교육·문화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인지원시설로,
- 나. 전문기관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이며, 수탁기관의 수탁포기에 따라 재위탁 하고자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 제2항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시설개요

- 소 재 지 : 서울시 성북구 오패산로 16길 23 (하월곡동)
- 시설규모 : 23㎡ (월곡종합사회복지관 2층, 사무실)
※ 사무실 외 기타 시설은 종합사회복지관과 시설 공유를 통해 센터 운영
- 주요시설 : 사무실, 상담실, 강의실, 강당 등
- 인력운영 : 4명 (센터장은 복지관장 겸임, 과장1, 대리1, 팀원2)

나. 주요 위탁 내용

- 위탁기간 : 3년(2025. 1. 1. ~ 2027.12.31.)

○ 위탁업무

- 성북외국인노동자센터 관리·운영 및 사업 일체

- 일반 상담 및 법률, 노무 등 상담사업 운영
- 한국어교육, 사회통합프로그램 등 교육사업 운영
- 문화체험 행사, 의료지원, 인권문화다양성 사업 등 운영
- 센터직원 채용 등 인사관리, 회계운영, 시설관리 등 센터 운영 전반

○ 소요예산 : 283,561천원(2024년)

- 산출근거 : 인건비 204,824천원, 운영비 11,737천원, 사업비 67,000천원

○ 수탁기관 선정방법 : 재위탁

※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: 적정 ('24.07.18)

다.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- 기존 외국인 노동자 위주에서 외국인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지원분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“외국인노동자센터”를 “외국인주민센터”로 명칭 변경
- 외국인주민을 위한 상담 및 교육사업, 문화지원 등 서비스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현장에서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
- 현재 위탁 운영 중인 사회복지법인 혜명은 월곡종합사회복지관의 수탁기간 만료('24.6.30.)로 성북외국인노동자센터의 수탁 포기를 요청하였으며, 공모를 통한 신규 수탁기관의 선정이 필요함
- 외국인주민의 한국생활의 적응력 향상 및 안정적 정착 여건 조성을 위해 공개모집을 통해 역량있는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재위탁 추진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

-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
-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7조, 제18조 및 제20조

제7조(지원의 범위)

-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0. 외국인 노동자 권익 및 인권 보호

제18조(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의 설치·운영 등)

- ① 시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외국인주민 지원 시설(이하 “지원시설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
- ② 시장은 지원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·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법인·단체의 직원을 지원시설에 파견 근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-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·단체·기관에 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이나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.

제20조(시설 및 센터의 운영지원 등)

- ① 시장은 제18조제3항이나 제19조제3항에 따라 지원시설 또는 지원센터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나. 예산조치 : 2025년 예산편성 요구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서울시 성북외국인노동자센터 민간위탁(재위탁) 추진계획
(가족다문화담당관-9810, 2024.6.20.)

※ 작성자 : 글로벌도시정책관 다문화담당관 김정애 (☎2133 -8690)